

# 지방체육회 임직원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

※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: 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(법 제2조)

동 안내문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체육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, 「공직선거법」 해석, 위반사항 신고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이 2026. 6. 3.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방체육회 신분을 유지한 채 동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?

- ▶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(공무원 등의 입 후보)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▶ 다만, 상근 임직원의 경우 해당 체육회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.

1-1. 만약 지방체육회 임원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되었을 경우 지방체육회 현 신분의 사퇴 시점은?

- ▶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(지방체육회 정관) 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- ▶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지방체육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할 것입니다.

2.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이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대통령 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(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 의원),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?

- ▶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거나 지방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- ▶ 선거운동기간은 「공직선거법」 제59조(선거운동기간)에 따라 기본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같은 조 단서조항에 따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있습니다.

(사례1) 지방체육회 임직원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문자메시지(문자 외 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, 인터넷, 전자우편,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? **언제든지(선거일도 포함) 가능합니다.**

(사례2) 지방체육회 임직원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통상적인 자기 명함을 수교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? **언제든지(선거일은 제외) 가능합니다.**

(사례3) 지방체육회 임직원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지지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? **언제든지(선거일은 제외,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은 제한) 가능합니다.**

## 2-1.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 방법(유의사항 포함)

### - 선거운동 방법

- ▶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「공직선거법」 제59조(선거운동기간) 등에 따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선거운동 방법	선거운동 가능기간
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,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활동, 소형의 소품(길이25cm, 너비25cm, 높이25cm 이내)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·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 등	<b>【원칙】</b> 선거기간개시일부부터 선거일 전일까지
문자메시지(자동 동보통신 방식 제외), 전자우편(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), 인터넷 홈페이지(카페, 블로그,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) 또는 그 게시판,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	<b>【예외】</b> 평상시(선거일에도 가능)
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이용, 말로 하는 선거운동	<b>【예외】</b> 평상시(선거일 제외)

### -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유의사항

- ▶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·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- ▶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▶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중 전송대행업체 위탁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.
- ▶ 말로 하는 선거운동 중 확장장치 이용 및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.
- ▶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.
- ▶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·음향 등을 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는 금지됩니다.(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8, 2023.12.28.신설)

### 3.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의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금지 행위

- ▶ 「공직선거법」 제85조(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·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.
- ▶ 「공직선거법」 제115조(제3자의 기부행위제한)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.

###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처벌 사항

- ▶ 「공직선거법」 제59조(선거운동기간)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54조(선거운동기간위반죄)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(선거일에 위반 시 가중처벌)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▶ 「공직선거법」 제8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55조(부정선거운동죄)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▶ 「공직선거법」 제1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57조(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)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### 5.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나요?

- ▶ 「정당법」 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에 따라 16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같은 조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.
  - ▶ 따라서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이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령이나 내부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.
- ※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제한대상: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 ②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, ③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, ④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, ⑤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없음. 다만, 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함.

6. 지방체육회 비상근 임원 및 상근 임직원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?

- ▶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지방체육회 정관·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85조(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) 제3항 및 같은 법 제115조(제3자의 기부행위제한)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.